#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41

발의연월일: 2021. 11. 4.

발 의 자:조승래·강선우·김정호

맹성규・양정숙・윤영찬

이상헌 · 정일영 · 조정식

최인호 · 최종윤 · 한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대구경북과학

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함으로써"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의"를 "국유·공유재산의"로, "등"을 "및 양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로, "국유재산을"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로, "대부"를 "양여(讓與)·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하거나"를 "양여·대부하거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 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창업지원)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	제1조(목적)
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	
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u>연구하며 기술</u>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	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
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업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u>국유재산의</u> 무상 대부 <u>등</u> )	제9조( <u>국유·공유재산의</u> 무상 대
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부 <u>및 양여 등</u> ) ① <u>정부 또는</u>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법」, 「물품관리법」 또는
<u>국유재산을</u> 무상으로 <u>대부</u> (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도 불구하고
수 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
	<u>을양</u> 여(讓與)·대부
	<u>.</u>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u>대</u>	② <u>양</u> :
<u>부하거나</u> 사용·수익하게 하는	<u> 여·대부하거나</u>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	

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u>·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u>ग स</u>	

-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 5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 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9조의4(창업지원) ① 대경과기
	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
	로 정한다.